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체계를 3급에서 2급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 12. 3. 공포,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2급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난 2017년 2월 신설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2017년 8월 신설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의3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이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 종사자 자격 및 경력 기준보다 엄격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의3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시설 기준 일부와 기관장, 상담 담당자,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지원 업무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규제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전문강사 위촉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의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5. 기관 소개 등 그 밖에 인식개선교육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 개발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 운영 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5호 서식의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인식개선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영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⑥ 개발원은 전문강사 위촉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현황 등을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에 공지하는 등 국가기관등의 장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인식개선교육기관에게 교육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개발원은 전문강사 위촉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개발원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강사 보유 현황 및 시설 환경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개발원이 영 제16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식개선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5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대학”을 “전문대학·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2급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원·대학”을 “대학원·대학·원격대학”으로 한다.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
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별표 6의 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별표 6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별표 1의2 제1호다목 중 “15㎡”를 “7.5㎡”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나목부터 다목까지)”를 “(나목)”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취득한 이후”를 “소지한 자 중”으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 3명 이상
별표 1의2 제2호나목1) 중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심리학과,”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로,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심리·상담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로 하며, 같은 목 나목3)을 5)로 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6의4의 필수과목의 교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의 이해와 재활	직업상담
재활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행정	직업재활개론
재활정책	재활사례관리
직업평가	재활실습 I

별표 6의4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활의학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장애의 진단과 평가
직업적응훈련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전환교육	재활윤리
보호 및 지원고용	사회적 목적기업
정신장애와 재활	재활실습 II
산업복지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노동법규와 재활
직업재활연구	장애인복지세미나
보조공학의 이해	장애와 인권
중증장애인재활	재활연구방법론
재활프로그램개발	장애서비스
자립생활	긍정적행동지원
직업심리	장애인평생교육론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장애인부모상담
진로개발과 상담	

별표 6의4 비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필수과목 중 재활실습 I 을 포함한 5개 과목 이상 이수하면 된다.

별표 6의4 비고 제2호 중 “6개”를 “8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이수하면 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7조의5 및 별표 6의4는 2021년 12월 4일부터, 별표1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9년부터 전문강사로 위촉한 강사는 제2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로 본다.

제3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미신청자의 경우 개정 이전의 제57조의5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기관	☐ 법인 ☐ 단체 ☐ 개인	
	명칭(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 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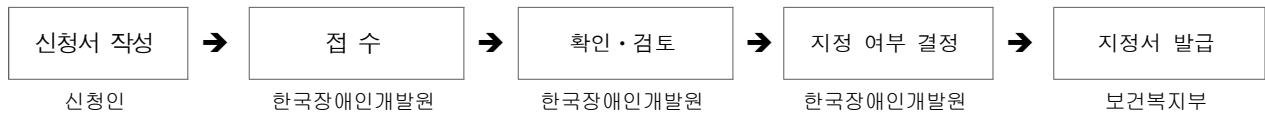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 운영 계획서 2.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 교재 5. 기관 소개 등 기타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대표자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3항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명칭(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변경 사항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주소 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 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	재발급 여부 결정	➔	지정서 재발급
신청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u> <u>「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u> <u>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u> <u>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u> <u>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u> <u>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u> <u>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u> <u>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조의2(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u> <u>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u> <u>“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u> <u>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국</u> <u>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2월 말까</u> <u>지 전년도 인식개선교육 실시</u> <u>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u> <u>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u> <u>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u>제2조의5(전문강사 위촉 및 인식</u> <u>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u> <u>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u> <u>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u> <u>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의 전</u> <u>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u> <u>중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u> <u>“개발원”이라 한다)이 전문강사</u> <u>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u> <u>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u> <u>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u> <u>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u> <u>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u> <u>첨부하여 개발원에 제출하여야</u> <u>한다.</u>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
강사 보유 현황

3. 교육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5. 기관 소개 등 그 밖에 인식개
선교육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
류

③ 개발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교육 운영 계획의 적합성 등
을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
되면 별지 제45호서식의 장애인
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④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국
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인식개
선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영 제1
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사
항이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별
지 제4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⑥ 개발원은 전문강사 위촉 및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현황 등
을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에
공지하는 등 국가기관등의 장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인식개
선교육기관에게 교육을 위탁하
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개발원은 전문강사 위촉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발원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

⑧ 개발원은 인식개선교육기관
의 강사 보유 현황 및 시설 환
경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로 점검하여야 하며, 개발원이
영 제16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
류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사본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별표 6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he first row has a solid top line, while the remaining nine rows have dashed top and bottom lines. Each row provides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are no letters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1. -----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 대학 · 원격대학
에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

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
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별표 6의4에 따
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
목(이하 “장애인재활 관
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43
호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수한 사람은 별지 제43호
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별표 6의3
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
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
부

나. -----

1) -----

전문대학·원격대학----

2) 사회복지사 -----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u>다.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u> <u>라. (생략)</u> 2. 「고등교육법」에 따른 <u>대학원·대학</u>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4. (생략) ② (생략)	----- ----- ----- ----- <u><삭 제></u> <u>다. (현행 라목과 같음)</u> 2. ----- <u>대학원·대학·원격대학</u> -----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